

「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12인

3. 제안이유

-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시장 책무 조항 신설(안 제3조)
- 공모사업 적정성 검토기준 구체화(안 제6조)
- 공모사업 추진체계 명확화(안 제7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부서검토: 정책기획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항목을 기존의 적법성, 사업 타당성 등의 범주에서 한 단계 나아가, 법령·조례 간 상충 여부, 시정과의 연계성, 중복·과잉 투자 가능성, 주민 갈등 요소, 시비 매칭 및 지속적 재정 부담 여부,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세부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공모사업 추진 여부를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공모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의 상시 관리 역할을 명시하고, 필요 시 전담조직 구성과 외부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사업 규모와 난이도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- 공모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시비 매칭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집행기관은 공모사업 선정 자체를 성과로 인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.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고, 주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사전·사후 보고 등 소통 절차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임.